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05
------------	-----

제출연월일 : 2007. 3. 30.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교육지원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나.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해당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대전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내지 제12조).
- 마.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소속 공무원을 파견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 · 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본 예산에 반영
- 다. 합의 : 예산담당관 및 교육청과 합의 되었음
- 라. 기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7. 3. 2 ~ 3. 2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내실화 및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지원계획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규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
4.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 지원) 시장은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자치구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자치구 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교육지원계획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지원금 사용잔액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지원사업 선정
2.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방법
3.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반영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당연직위원은 기획관리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기획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교육계·학부모 및 시민단체 관계자

4.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협력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파견요청) ①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의 지원

2.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3. 그 밖에 교육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9.2.8>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는 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③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 ⑦ 시·도는 관할 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20조 (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

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제22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38조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사용료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1조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조 (목적)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9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시행일 2005.1.30]]

제2조 (학교의 종류)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교육기본법

제1조 (목적)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교육재정)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제7253호(지방교육양여금법 폐지법률)]

제9조 (학교교육)①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계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 · 도별 조례 주요내용 비교표

구 분	우 리 시	서 울 시	경 기 도	충 북 도
조례명	대전광역시 교육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06.7.19)	경기도 교육지원조례 ('05.12.30)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06.11.17)
적용범위 (지원대상)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 초 · 중 · 고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 초 · 중 · 고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사업의종류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및 복지 증진 우수인재 양성 자치구단위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 기타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우수인재 양성 자치구단위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 기타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기여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 우수인재 양성 과학 및 영재교육 직업교육 및 교육복지증진 자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 기타도자기인정하는 사업	교육격차해소 교육환경 및 복지 증진 국제경쟁력 제고사업 과학 및 영재교육 기타도자기인정하는 사업
교육지원 계획수립	계획수립	좌 동	좌 동	좌 동
예산지원	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 예산 지원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15이내 금액 ('07년 488억원 편성)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 예산 지원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 예산 지원
위 원 회 (협의회) 구 성	위원수 / 12명 이내 위 원 장 : 호선 부위원장 : 호선	위원수 / 15명 이내 위원장 : 시 경영기획실장 부위원장: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위원수 / 16명 이내 공동의장 - 도 행정부지사 - 교육청 부교육감	위원수 / 12명 이내 위원장: 도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교육청 부교육감
교육실무 협 의 회	미구성	구 성	미구성	미구성
교육협력관 파 견	파견요청 가능	좌 동	좌 동	좌 동

※ 조례제정 시 · 도 현황 : 서울, 경기, 충북